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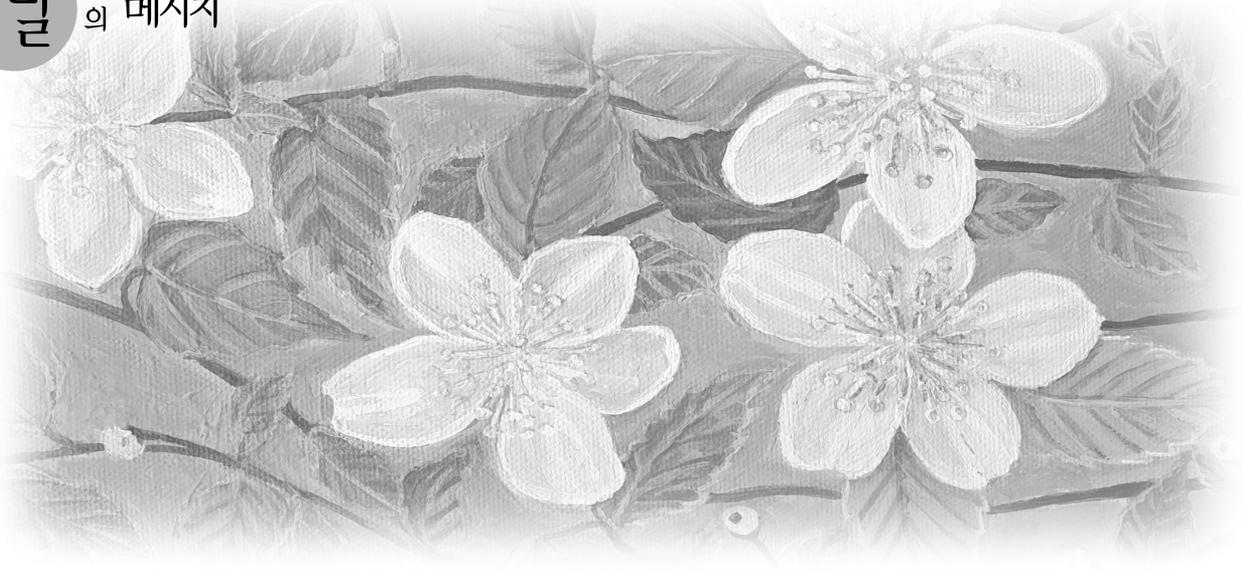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누상동 그림방 앞 수선화 화분 2020〉

- 4. 이 달의 메시지
- 6. 특집 I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9 상담 통계 ㉓
- 17. 특집 II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9 소송구조사건 분석 ㉑
- 23. 인터넷 상담
- 24. 가정폭력상담실
- 26.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㉔
- 28. 결혼과 인생(207) 만화일기
극한의 자유 _ 장차현실
- 29. 좋은 책
다시 쓰는 여성 세계사
- 30. 임상실습 소감문
- 34.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 36.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이 달의 메시지



다시 상담소의 문을 열며

일상의 소중함 깊이 새기고, 조심스럽게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국가 전반 아니 전 세계의 위기 앞에서 상담소도 지난 두 달 여 동안 상담소 역사상 처음으로 면접상담을 중지한 전대미문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에 이르고 있던 지난 2월 25일 서울가정법원의 재판연기와 휴정에 맞추어 상담소도 서울가정법원 민원실 출상상담을 임시 중지하고 또한 관할구청인 영등포구청의 권고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2월 26일부터 상담소 본부에서의 면접상담도 임시 중지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불특정다수의 내담자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상담소로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코로나19 감염과 관련 우려가 커지던 때여서 시의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지만 전화와 인터넷상담을 열어두었음에도 언제쯤 면접상담이 가능할지 문의가 계속되고 특히 시급한 소송구조 사건들도 적지 않아 여러 가지로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그 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루 열 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신중하게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 논의 되는 시점이어서 상담소도 이에 발맞추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난 4월 20일부터 전화예약을 받아 현관에서 문진과 체온측정,

손 소독, 마스크 확인 등을 거쳐 충분한 여유를 두고 면접상담을 시작하였고, 27일부터는 가정법원과 협의를 거쳐 출장상담도 재개하였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아도 일상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이어서 먹고 사는 것만큼 크고 작은 가정문제가 번민과 고통을 가져오고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코로나 19에 대한 두려움 보다 법적인 조언이 절실한 이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면접상담을 중단하고 있던 때 무작정 상담소를 찾는 이들도 간혹 있어 어렵게 전화상담이나 인터넷상담 혹은 예약을 하도록 안내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면접상담을 잠시 중단하였다고 해도 상담소는 언제나처럼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직원들은 일상에서 너무 바빠 잠시 미뤄두었던 맡은 바 업무를 정리하느라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예산 관련 업무도 예년처럼 진행되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 엄혹한 시절을 맞아 예산을 더욱 충실하게 기획하고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으나, 가정문제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상담소로서는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이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상담소의 예산을 이보다 몇 십 배 몇 백 배씩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들과 같이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가 채 눈길을 주고 손길을 내밀기 전부터 64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법률구조'의 씨앗을 뿌려 우리 사회 모든 가정과 가족구성원의 복리를 위해 상담과 소송구조, 법 개정운동, 법률계몽,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사업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한 발 앞서 새 길을 열어 온 상담소의 존재의의를 바르게 인식해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금 인구문제 전반을 위시해 사회의 근간으로서 가정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가족구성원 사이에 갈등과 마찰이 심해져 가정문제 또한 심상치 않은 상황이어서 상담소의 역할이 더욱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지금 어떠한 전망도 조심스럽지만, 면접상담을 재개하면서 상담소의 구성원들은 새롭게 우리 일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가 각자의 마음속에서 법률구조사업에 더욱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하루빨리 극복되어야 하고, 이 비슷한 일도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어떠한 현실에서도 삶의 진리를 배우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번 사태를 지나며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란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 때로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했던 일상이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프게 배우고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만큼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 한순간을,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반갑다고 두 손을 마주 잡고, 열싸 안기도 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일상이 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특 집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9년도 상담 통계 ③ | 가정폭력행위자

부부폭력, 남성 행위자가 절대적으로 많고 다문화가정에서 폭력 증가 양상

본 상담소는 2019년 한 해 동안 서울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등으로부터 가정폭력처벌법상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행위자 총 232명을 수탁받아 상담을 진행하였다. 2018년에 위탁받아 2019년까지 상담을 진행한 행위자 132명을 포함하면 2019년에 상담을 진행한 행위자는 모두 364명이었으며, 이 중 260명은 2019년에 상담을 종료하였다. 이하에서는 2019년에 상담이 종료된 260명에 대한 항목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1.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0대가 28.5%로 가장 많아

부부폭력, 남성 행위자가 절대적으로 많아

2018년에 비해 사실혼 관계에서의 폭력 2배 증가
다문화가정에서의 폭력 증가

부부의 경우 동거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가

27%로 가장 많고,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육아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폭력 발생 많아

2016년 19%(24명), 2017년 19.9%(34명), 2018년 21%(68명)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0년 전인 2009년 15.2%(10명)와 비교하면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여성 행위자 63명 중 50명(79.4%)은 피해자와 부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행위자		피해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남성	197	75.8	61	23.5
여성	63	24.2	199	76.5
합계	260	100	260	100

① 남녀별

행위자 260명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197명(75.8%), 여성이 63명(24.2%)이었다. 여성 행위자 중 39명(61.9%)은 부부가 함께 위탁된 경우였다. 여성 행위자의 경우 2018년 21%(68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는데, 2015년 19%(24명),

② 연령별

연령별로 보면 행위자의 경우 50대가 28.5%(7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27.7%), 30대(25.4%)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는 30대가 29.5%(77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25.4%)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연령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10 대	-	-	1	0.4
20 대	12	4.6	15	5.8
30 대	66	25.4	77	29.5
40 대	72	27.7	65	25.0
50 대	74	28.5	66	25.4
60대 이상	36	13.8	36	13.9
합 계	260	100	260	100

③ 교육수준별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행위자는 고등학교 졸업이 38.5%(10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이 33.1%(86명)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이 42.7%(111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이 32.3%(84명)로 나타났다.

구분 교육정도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초졸이하	17	6.5	14	5.4
중 졸	24	9.2	21	8.1
고 졸	100	38.5	111	42.7
전문대졸	20	7.7	18	6.9
대 졸	86	33.1	84	32.3
대학원이상	13	5.0	12	4.6
합 계	260	100	260	100

④ 직업별

행위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회사원이 28%(73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영업이 21.2%(55명)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주부가 38.5%(10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회사원이 19.6%(51명)를 차지했다.

구분 직업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주 부	26	10.0	100	38.5
회사원	73	28.0	51	19.6
단순노무	38	14.6	25	9.6
자영업	55	21.2	39	15.0
교육직	6	2.3	10	3.8
전문직	4	1.5	2	0.8
기술직	29	11.2	10	3.8
공무원	1	0.4	1	0.4
운전	10	3.8	3	1.2
무직	16	6.2	12	4.6
학생	2	0.8	7	2.7
합 계	260	100	260	100

⑤ 경제상태별

월수입을 기준으로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행위자의 경우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경우가 23.9%(62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2.3%(58명)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월수입이 없거나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45.7%(119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월 수 입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100만원 미만	9	3.5	11	4.2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43	16.5	41	15.8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62	23.9	48	18.5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8	22.3	25	9.6
500만원 이상	44	16.9	16	6.2
일정한 수입이 없음	44	16.9	119	45.7
합 계	260	100	260	100

⑥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부부관계인 경우(법률혼 부부 및 사실혼 부부 포함)가 230

명으로 88.4%를 차지하였다. 이 중 사실혼 부부인 경우는 14.6%(38명)로 2018년 7.4%(24명)와 비교하였을 때 약 2배 증가하였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행위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해소에 대한 법적 부담이 적고,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및 경제적 책임감을 덜 느끼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손쉽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정기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결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느끼고 있었고,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폭력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겠다는 인식이 신고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¹⁾.

다음으로 부모-자녀관계인 경우가 10%(26명)로 나타났는데, 이 중 자녀가 성인 자녀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18년에 부모-자녀관계인 경우가 14.6%(4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감소하였다.

관 계	구 분		수 (명)	백분율(%)
	법률혼 부부	사실혼 부부		
부부관계	법률혼 부부		192	73.8
	사실혼 부부		38	14.6
부모-자녀 관계	부모-성인자녀 관계		25	9.6
	부모-미성년자녀 관계		1	0.4
기타 가족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1	0.4
	남매 관계		1	0.4
	자매 관계		1	0.4
	조부모와 손자 관계		1	0.4
합 계		260	100	

한편 행위자와 피해자가 부부관계인 경우에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배우자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이 8.3%(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4.1%(3명), 2017년 4.5%(6명), 2018년 6.9%(18명)와 비교했을 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인 행위자는 총 9명으로 이들의 본국은 중국

이 55.6%(5명)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이집트, 몽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태국 등이 있었다. 외국인 피해자는 총 10명으로 이들의 본국 역시 중국이 50%(5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일본이 20%(2명)로 나타났다.

본국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중국	5	55.6	5	50
일본	-	-	2	20
이집트	1	11.1	-	-
몽골	1	11.1	-	-
우즈베키스탄	1	11.1	1	10
베트남	1	11.1	1	10
태국	-	-	1	10
합 계	9	100	10	100

⑦ 혼인형태별²⁾

행위자와 피해자의 혼인형태를 보면,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76.5%(176명)로 가장 많았다.

혼인형태	구 분	수 (명)	백분율(%)
(남)초혼-(여)초혼		176	76.5
(남)재혼-(여)초혼		10	4.3
(남)초혼-(여)재혼		10	4.3
(남)재혼-(여)재혼		34	14.8
합 계		230	100

⑧ 동거기간별³⁾

행위자와 피해자의 동거기간을 살펴보면, 동거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가 27%(62명)로 가장 많았고, 이

1) 여성가족부의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의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 인지도를 조사하였는데, 응답자들은 '전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문항에 85.8%가 '그렇다' 라고 답변하였다(2016년 62.1%).

2) 혼인형태별 분석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인 경우(230명)에 국한하였다.

3) 동거기간별 분석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인 경우(230명)에 국한하였다.

는 2018년 24.9%(65명)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증가하였다. 동거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부부 62명 중 54명(87.1%)은 결혼기간에 축적된 갈등이 배우자와의 대화 또는 취미생활 공유 등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재정립하지 못한 채 갈등이 지속되면서 집안일과 관련된 사소한 말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이 시기는 자녀양육이 주된 관심사가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부부 62명 중 15명(24.2%)은 자녀의 게임중독이나 비행 등 생활태도, 자녀의 학습태도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책임을 배우자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였다.

그 다음으로 동거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가 23.9%(55명)로 많았는데, 2018년 18%(47명)와 비교하였을 때 1.3배 이상 증가하였다. 다른 기간에 비해 두드러진 특징은 부부 55명 중 19명(34.6%)이 육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는데, 가사와 양육을 평등하게 책임지기를 원하는 아내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유지하려는 남편 간의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폭력이 발생하였다.

동거기간 \ 구 분	수 (명)	백분율(%)
1년 미만	10	4.3
1년 이상 ~ 5년 미만	55	23.9
5년 이상 ~ 10년 미만	35	15.2
10년 이상 ~ 20년 미만	62	27.0
20년 이상 ~ 30년 미만	43	18.7
30년 이상	25	10.9
합 계	230	100

2. 행위자의 폭력유형 및 폭력수준에 따른 분석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59.2%로 가장 많아

- 4) 폭력행사의 이유는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이다.
- 5) 폭력행사의 이유는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이다.
- 6) 폭력행사의 이유는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이다.
- 7)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에는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과 자녀폭력이 동시에 수반된 경우(11명, 4.2%)도 포함하였다.

2018년에 비해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에 맞대응하는 남편 4배 증가

2018년에 비해 재물손괴 사건 2배 이상 증가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적 폭력과 심한 신체적 폭력 많이 행사해

① 폭력유형별

폭력유형별로 살펴보면,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59.2%(154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에 대한 아내의 맞대응이 10%(26명)로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하면,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⁷⁾이 11.8%(38명)에서 9.2%(24명)로 감소하였고, 자녀에 의한 부모폭력은 4.6%(15명)에서 2.7%(7명)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가족관계에서의 폭력도 3.6%(12명)에서 1.2%(4명)로 감소하였다.

2018년에 비해 증가한 폭력유형은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에 대한 남편의 맞대응으로, 2018년 1.5%(5명)에서 5.8%(15명)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들 15명의 폭력행사 이유를 살펴보면, 결혼생활 중 남편의 폭력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는데 아내가 남편의 외도사실을 언급했거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호 말다툼을 하면서 아내가 남편을 폭행했고, 이에 맞서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하면서 상호간 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5명, 33.3%). 이들 아내는 어릴 적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가정에서 성장하면서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가 내재되어 있었고 이와 동시에 갈등상황에서 남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폭력을 학습함으로써 공격적인 행동인 폭력을 선택하여 상호폭력의 순환고리를 형성하고 있었다.

관 계		구 분	수(명)	백분율(%)
부부 관계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		154	59.2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에 대한 아내의 맞대응		26	10.0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		24	9.2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에 대한 남편의 맞대응		15	5.8
	아내 및 자녀폭력		11	4.2
부모-자녀 관계	자녀폭력		13	5.0
	부모폭력		7	2.7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에 대한 자녀의 맞대응		6	2.3
기타 가족 관계	며느리에 의한 시어머니폭력		1	0.4
	오빠에 의한 동생폭력		1	0.4
	언니에 의한 동생폭력		1	0.4
	손자에 의한 조부모폭력		1	0.4
합 계			260	100

② 폭력행위에 대한 사건분류

행위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사건분류를 살펴보면, 그 죄명이 '폭행'인 경우가 58%(151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재물손괴'가 8.4%(22명)로 많았으며 이는 2018년 3.1%(10명)와 비교하여 2.7배 이상 증가하였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위협한 물건을 들고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한 경우도 4.6%(12명)에 달했으며, 이는 2018년의 5.9%(19명)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신체적 폭력에 집중되어 있던 처벌이 점차 확대되어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서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심각하게 체감하고 인식하여 법적 처벌을 요청하고 있었다.

폭 력 수 준		구 분	수(명)	백분율(%)
폭행			151	58.0
재물손괴			22	8.4
상해			15	5.7
특수협박			7	2.7
폭행, 재물손괴			7	2.7
존속폭행			7	2.7
폭행, 특수협박			6	2.3
협박			5	1.9
특수상해			5	1.9
특수폭행			4	1.5
폭행치상			3	1.1
폭행, 감금			3	1.1
폭행, 협박			2	0.8
특수재물손괴			2	0.8
강제추행, 폭행			2	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2	0.8
기타 ⁸⁾			17	6.8
합 계			260	100

③ 폭력행위의 정도

좀 더 구체적으로 행위자의 폭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 통제 행동, 경미한 신체적 폭력, 심한 신체적 폭력 등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본소는 2018년까지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하는 언어폭력,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수준에서 뺨을 때리는 정도까지인 경미한 신체적 폭력, 그리고 발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흥기를 사용하는 등의 심한 신체적 폭력 등 폭력행위의 정도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019년 분석에서는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 조사의 폭력 유형 및 행동에서 사용된 조사문항을 참고하

8) 상해, 폭행/ 존속폭행, 폭행/ 특수폭행, 폭행/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폭행, 재물손괴, 존속폭행/ 특수상해, 폭행/ 특수상해, 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상습상해, 재물손괴/ 재물손괴, 특수협박, 폭행/ 특수폭행, 재물손괴/ 존속폭행, 재물손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폭행/ 특수폭행, 협박/ 특수중감금, 주거침입/ 폭행, 재물손괴, 존속상해/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각 1건(각 0.4%)을 포함하였다.

여 언어폭력을 정서적 폭력에 포함시켰고,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 통제 행동을 추가하였다⁹⁾. 폭력 행동은 법원에서 접수한 보호처분결정문에 첨부된 범죄사실의 내용을 분석

한 것으로, 34개 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폭력 행동이 있으면 가해 경험으로 산출하였다.

항 목	전 체		남 성		여 성	
	폭력행동 유무		폭력행동 유무		폭력행동 유무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정서적 폭력	-	260(100)	-	197(100)	-	63(100)
1.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했다.	-	260(100)	-	197(100)	-	63(100)
2.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42(54.6)	118(45.4)	103(52.3)	94(47.7)	39(61.9)	24(38.1)
3.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셨다.	163(62.7)	97(37.3)	124(62.9)	73(37.1)	39(61.9)	24(38.1)
4. 피해자가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다.	255(98.1)	5(1.9)	192(97.5)	5(2.5)	63(100)	-
5. 피해자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255(98.1)	5(1.9)	193(98.0)	4(2.0)	62(98.4)	1(1.6)
6.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	256(98.5)	4(1.5)	194(98.5)	3(1.5)	62(98.4)	1(1.6)
경제적 폭력	234(90.0)	26(10.0)	173(87.8)	24(12.2)	61(96.8)	2(3.2)
7.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240(92.3)	20(7.7)	177(89.8)	20(10.2)	63(100)	-
8. 피해자의 재산 또는 피해자에게 지분이 있는 재산을 동의없이 처분하였다.	252(96.9)	8(3.1)	190(96.4)	7(3.6)	62(98.4)	1(1.6)
9.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246(94.6)	14(5.4)	184(93.4)	13(6.6)	62(98.4)	1(1.6)
10.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을 떠넘겼다.	253(97.3)	7(2.7)	192(97.5)	5(2.5)	61(96.8)	2(3.2)
통 제	211(81.2)	49(18.8)	156(79.2)	41(20.8)	55(87.3)	8(12.7)
11.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231(88.8)	29(11.2)	172(87.3)	25(12.7)	59(93.7)	4(6.3)
12. 친정식구 또는 본가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249(95.8)	11(4.2)	186(94.4)	11(5.6)	63(100)	-
13. 어디에 있는지 꼭 알려고 했다.	235(90.4)	25(9.6)	178(90.4)	19(9.6)	57(90.5)	6(9.5)
14.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대했다.	244(93.8)	16(6.2)	186(94.4)	11(5.6)	58(92.1)	5(7.9)
15. 바람을 피운다고 자꾸 의심하고 비난했다.	232(89.2)	28(10.8)	174(88.3)	23(11.7)	58(92.1)	5(7.9)
16.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에도 허락을 받도록 했다.	259(99.6)	1(0.4)	196(99.5)	1(0.5)	63(100)	-
17.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감시했다.	239(91.9)	21(8.1)	180(91.4)	17(8.6)	59(93.7)	4(6.3)
18. 사회활동(직업갯기, 교육받기, 사회적 성취 등)을 못하게 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했다.	239(91.9)	21(8.1)	179(90.9)	18(9.1)	60(95.2)	3(4.8)
19. 외출시간, 귀가시간 등을 허락받도록 요구했다.	235(90.4)	25(9.6)	175(88.8)	22(11.2)	60(95.2)	3(4.8)
20. 피임을 거부하거나 성관계 도중 합의없이 피임기구를 제거했다.	260(100)	-	197(100)	-	63(100)	-
성적 폭력	253(97.3)	7(2.7)	190(96.4)	7(3.6)	63(100)	-
21. 무력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했다.	253(97.3)	7(2.7)	190(96.4)	7(3.6)	63(100)	-
22.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했다.	253(97.3)	7(2.7)	190(96.4)	7(3.6)	63(100)	-
23.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만지기, 키스, 포옹 등)을 했다.	254(97.7)	6(2.3)	191(97.0)	6(3.0)	63(100)	-
24. 피해자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없이 촬영했다.	259(99.6)	1(0.4)	196(99.5)	1(0.5)	63(100)	-
25. 피해자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동의없이 유포했다.	259(99.6)	1(0.4)	196(99.5)	1(0.5)	63(100)	-

9) 여성가족부(2019).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p17~27.

항 목	전 체		남 성		여 성	
	폭력행동 유무		폭력행동 유무		폭력행동 유무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경미한 신체적 폭력	41(15.8)	219(84.2)	32(16.2)	165(83.8)	9(14.3)	54(85.7)
26. 피해자를 겨냥해서 물건을 던졌다.	163(62.7)	97(37.3)	124(62.9)	73(37.1)	39(61.9)	24(38.1)
27. 피해자를 세게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들었다.	114(43.8)	146(56.2)	85(43.1)	112(56.9)	29(46.0)	34(54.0)
28. 손바닥으로 뺨이나 다른 곳을 때렸다.	111(42.7)	149(57.3)	86(43.7)	111(56.3)	25(39.7)	38(60.3)
심한 신체적 폭력	91(35.0)	169(65.0)	60(30.5)	137(69.5)	31(49.2)	32(50.8)
29.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148(56.9)	112(43.1)	101(51.3)	96(48.7)	47(74.6)	16(25.4)
30. 피해자를 물건(책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239(91.9)	21(8.1)	182(92.4)	15(7.6)	57(90.5)	6(9.5)
31. 피해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135(51.9)	125(48.1)	95(48.2)	102(51.8)	40(63.5)	23(36.5)
32. 피해자 목을 졸랐다.	227(87.3)	33(12.7)	164(83.2)	33(16.8)	63(100)	-
33. 피해자를 칼이나 흉기로 위협했다.	227(87.3)	33(12.7)	170(86.3)	27(13.7)	57(90.5)	6(9.5)
34. 피해자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흉기로 휘둘렀다.	226(87.3)	34(13.1)	169(85.8)	28(14.2)	57(90.5)	6(9.5)

행위자 260명 모두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하는 정서적 폭력이 있었다. 이러한 정서적 폭력은 신체적인 폭력과 달리 그 피해가 가시적이거나 즉각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들은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언어적 폭력으로 야기되는 수치감과 모욕감으로 인한 정신적 황폐함이 더욱 큰 상처로 남는 폭력이라고 호소하면서 폭력에 대한 민감성에 행위자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정서적 폭력 중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한 경우’가 45.4%(118명)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8년 51.5%(167)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이지만, 10년 전인 2009년 15.2%(10명)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 경우’는 37.3%(97명)으로 2018년 25.9%(84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10년 전인 2009년 16.7%(11명)에 비해 2.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행위자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피해자에게 중요한 물건 또는 가정 내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던지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았다. 가정폭력의 본질은 상대방에 대한 지배와 통제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행위자는 자신이 원하는 통제욕구에 기인하여 다양한 폭력적인 행동으로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위협하

나 협박하고 있었다.

경제적 폭력이 있는 경우는 10%(26명)이었다.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경우’가 7.7%(20명)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부부가 의논하여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고 생활비 지출, 자녀양육 및 교육,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 하는 문제, 및 재산관리를 행위자가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경제력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제압하려는 행위는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가정폭력임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부부가 함께 의논해서 재산관리를 하는 등 평등한 부부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개인의 인식개선 및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통제의 유형에서는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11.2%(29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바람을 피운다고 자꾸 의심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10.8%(28명)로 많았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행동이나 인간관계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통제 행위는 직접적인 폭력행위 없이도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인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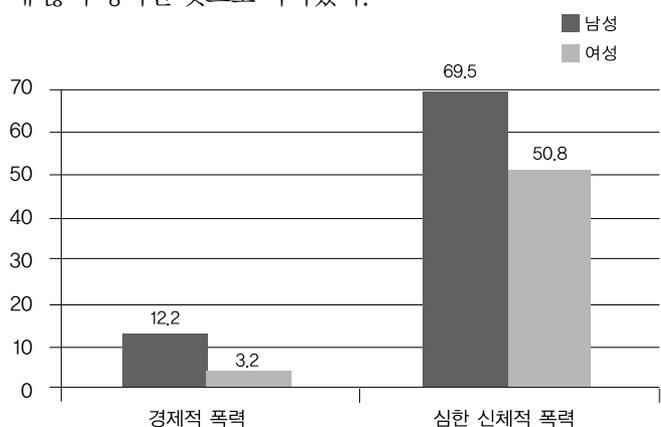
성적 폭력이 있었던 경우는 2.7%(7명)로 나타났다. 무력을 사용하여 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

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였다. 특히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의심은 성적 폭력으로 이어져 성적으로 배우자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한편 경미한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는 84.2%(219명)로 나타나 2018년 74.4% (241명)에 비해 1.1배 이상 증가하였다. 경미한 신체적 폭력 중 ‘손바닥으로 뺨이나 다른 곳을 때린 경우’가 57.3%(149명)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2018년 47.5%(154명)에 비해 1.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10년 전인 2009년 16.7%(11명)에 비해 3.4배 이상 증가하였다.

심한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는 65%(169명)로 나타났다. 심한 신체적 폭력 중 ‘피해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린 경우’가 48.1%(125명)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2018년 33.6%(109명)에 비해 1.4배 이상 증가하였다. 행위자의 폭력이 몇 번에 그치지 않고 5회 이상 수회에 걸쳐 있었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심한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 2018년 70.4%(228명)에 비해 감소하였고, 대부분 항목의 폭력행위 역시 감소하였으나 분노조절에 실패한 행위자의 폭력은 피해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심을 더욱 심하게 느끼게 하고 있었다.

아래의 표에서는 폭력행위 정도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여섯 가지 폭력행위 중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경제적 폭력과 심한 신체적 폭력이었다. 즉 남성의 경우 경제적 폭력과 심한 신체적 폭력을 여성에 비해 많이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경제적 폭력과 심한 신체적 폭력 차이]

3. 행위자의 폭력행사 이유에 따른 분석

폭력행사 이유 :

가부장적 사고 등 성격차이 → 행위자 음주 → 부부간 불신 순

행위자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은

불평등한 가치관 강화시키고,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

가정폭력을 심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

특히 육아문제와 자녀양육 방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① 폭력행사 이유

행위자가 상담위탁처분을 받게 된 사건에서의 폭력행사 이유를 분석한 결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등 성격차이 (30.2%, 173건), 부부간 불신(16.4%, 94건), 행위자 음주 (14.9%, 85건) 순으로 나타났다¹⁰⁾.

첫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등 성격차이(39.6%, 173건)로 나타났다. 행위자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은 부부간 불평등한 가치관을 강화시켜 가장인 남편 또는 아버지는 우월하고 존중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아내 또는 자녀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약자이며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인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피해자가 높임말을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흥을 보거나’, ‘피해자가 자신과 다른 길로 마중 나왔다고’, ‘행위자가 피해자를 때릴 때 자주 사용했던 구두주걱을 숨겨두었다고’, ‘피해자가 때릴 듯이 달려드는 행위자를 피해 화장실에 숨었다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게끔 하였다. 또한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및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임산부가 몸에 좋지 않은 라면을 먹는다고’, ‘집 청소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저녁 밥상을 제대로 차리지 않았다고’ 화가 나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또 다

10)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임.

른 측면에서는 이웃 등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통제하고자 하며 '이웃의 우편물을 쓸데없이 대신 받아주었다고', '쓸데없이 장을 많이 봐서 옆집과 반찬을 나누었다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이러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은 육아문제와 자녀양육 방식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54건, 9.4%). 영유아기 자녀를 둔 경우 가사와 양육을 평등하게 책임지기를 기대하는 아내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유지하려는 남편간의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폭력이 발생하였고(28건, 4.9%), 아동 및 청소년기 자녀를 둔 경우 게임중독이나 비행 등 자녀의 생활태도 및 자녀의 학습태도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그 책임을 배우자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였다(26건,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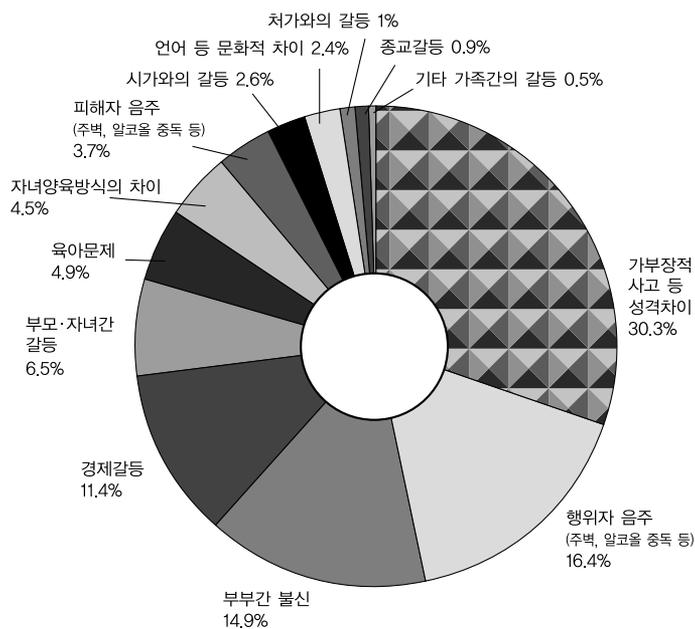
둘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행위자의 음주(16.4%, 94건)로 나타났으며, 이 중 75건은 남성 행위자였다(79.8%). 전체 행위자 260명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38.1%(99명)에 해당하였다. 음주와 폭력유형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행위자는 음주상태였을 때 심한 신체적 폭력을 더 많이 행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8.1%). 특히 행위자는 음주상태에서 피해자를 칼이나 흉기로 위협 또는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흉기를 휘두르는 정도의 심한 신체적 폭력을 더 많이 행사하였다. 술은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주변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폭력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들은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폭력을 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행사의 원인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부부간 불신(14.9%, 85건)이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확대되면서 잦은 회식자리 참석과 늦은 귀가로 인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되어 폭력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았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의심은 강제 추행, 감금 등을 통해 성적으로 배우자를 통제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6건, 2.3%).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의 과거 또는 현재

의 외도, 이로 인한 상습적인 거짓말 등이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불신하게 만들어 부부갈등이 증폭되면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많았다.

폭력행사 원인	구 분	수(건)	백분율(%)
가부장적 사고 등 성격차이		173	30.3
행위자 음주(주벽, 알코올 중독 등)		94	16.4
부부간 불신		85	14.9
경제갈등		65	11.4
부모-자녀간 갈등		37	6.5
육아문제		28	4.9
자녀양육방식의 차이		26	4.5
피해자 음주(주벽, 알코올 중독 등)		21	3.7
시가와외의 갈등		15	2.6
언어 등 문화적 차이		14	2.4
처가와외의 갈등		6	1.0
종교갈등		5	0.9
기타 가족간의 갈등		3	0.5
합 계		572	100

※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임.



[폭력행사 원인]

4. 행위자의 상담요인에 따른 분석

피해자 등 상담 병행 83.5%

행위자 중 78.1%가 다양한 프로그램 경험

① 상담대상자별

법원에서 피해자 상담을 병행하도록 결정한 경우는 16.2%(42명)에 달했는데, 2018년 13.6%(44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이는 가정보호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상담 욕구와 동의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본 상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그리고 자녀 또는 부모 등 가족을 함께 상담한 경우가 83.5%(217명)로 나타났다. 본 상담소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상담처분을 통해 대다수 피해자인 아내가 행위자인 남편의 폭력이 중단되어 관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변화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상 담 방 법	구 분	수(명)	백분율(%)
행위자 본인상담		43	16.5
행위자 본인·배우자·기타 가족상담		217	83.5
합 계		260	100

② 상담방법별

2019년 본 상담소의 가정폭력행위자 상담은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음주문제 상담, 집단상담, 교육강좌, 부부캠프, 최종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등 총 6단계로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자조모임인 라오니 모임과 라오니 캠프를 운영하였다. 2019년에 상담이 종료된 260명 중 78.1%(203명)에 달하는 행위자가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뿐 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집단상담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상 담 방 법	구 분	수(명)	백분율(%)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57	21.9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교육프로그램		31	11.9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집단상담		42	16.2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교육프로그램·집단상담		130	50.0
합 계		260	100

5. 가정폭력상담의 효과성 :

상담종료 시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의 폭력중단

부부는 상담종료 이후 56.1%가 화해·동거

① 부부관계

가. 폭력재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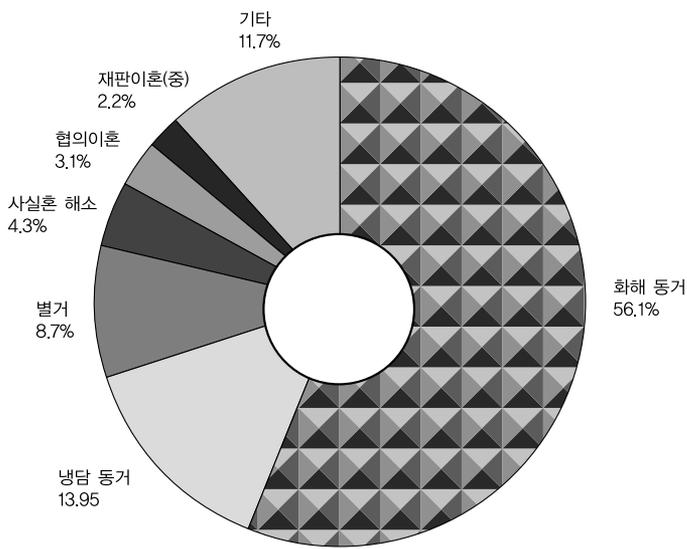
우선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부부인 경우 230명의 상담종료 시 폭력재발 여부 및 관계회복 여부를 살펴보았다. 상담처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담종료 시까지 98.7%(227명)가 폭력의 재발이 없었다. 폭력이 재발된 3명은 상담위탁처분이 6개월 기간연장 되어 폭력의 재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되었다.

상담처분 중 폭력재발여부	구 분	수 (명)	백분율(%)
폭력재발 없음		227	98.7
폭력재발 함		3	1.3
합 계		230	100

나. 부부관계 회복 여부

부부관계 회복여부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관계를 회복하여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56.1%(129명)로 가장 많았다.

구 분	수(명)	백분율(%)
상담종료 후 부부관계		
화해·동거	129	56.1
냉담·동거	32	13.9
별 거	20	8.7
사실혼 해소	10	4.3
협의이혼	7	3.1
재판이혼(중)	5	2.2
기 타 ¹¹⁾	27	11.7
합 계	230	100



[상담종료 시 부부관계]

② 부모자녀관계

가. 폭력재발 여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부모자녀인 경우(26명), 상담 처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담종료 시까지 폭력의 재 발은 한 명도 없었다.

나. 부모자녀관계 회복 여부

부모자녀관계 회복여부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주거지를 달리하여 따로 살고 있는 경우가 42.3%(11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서로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38.5%(10명)로 나타났다.

구 분	수 (명)	백분율(%)
상담종료 후 부모자녀관계		
주거지 분리	11	42.3
화해·동거	10	38.5
냉담·동거	3	11.6
기 타 ¹²⁾	2	7.6
합 계	26	100

차연실 상담위원



11) 기간연장(5.2%, 12명), 보호처분 변경(3.9%, 9명), 행위자 사망으로 인한 보호처분 취소(2.2%, 5명), 타기관으로 연계(0.4%, 1명) 등을 포함하였다.

12) 보호처분 변경(3.8%, 1명), 기간연장(3.8%, 1명) 등을 포함하였다.

특 집 II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9 소송구조사건 분석 ① | 파산·면책, 면책확인

본소의 파산면책 소송구조는 2006년 60건으로 시작해 해마다 증가 추세
2019년 파산·면책 사건, 면책확인 사건 총 143건 분석

전 남편이 사용한 카드 빚, 빚으로 시작한 결혼생활, 중증 질환으로 인한 병원비 및 생활비, 사업 부진으로 인한 부도와 사기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의 길로 접어들어

1998년 IMF 시기 이후 2004년에는 신용불량자 수가 361만 명까지 급증하여 이에 따른 가족 간 갈등 증폭과 가족해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바 있었다. 이에 사태악화로 인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체되는 가정과 가정의 회복을 원하지만 신용불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조속한 사회와 가정으로의 복귀를 위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사건 법률구조를 시작하였다. 본소의 파산면책소송구조 건수는 2006년 60건으로 시작하여 2012년 90건, 2014년 97건, 2016년 149건, 2017년 154건, 2019년 143건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유형은 먼저 사업 실패로 수 천만 원에서 수 억 원대의 빚을 지는 경우가 있고, 궁핍한 생활을 면하기 위해 카드 및 대출 등을 이용하여 생활자금으로 사용한 채무가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에 이르는 경우 등이 있다. 그리고 보증채무 또는 명의도용(대여)으로 인한 부채로 대포차, 대포폰, 대포통장과 같이 형사 문제와 함께 연결된 경우 등도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편의 채무를 보

증서거나 남편이 아내의 명의를 도용하여 채무를 지게 되는 사례들이 많고, 또 어려운 가정형편을 벗어나고자 소규모로 장사 등을 하다가 빚을 지게 되어 가정이 해체되고 거리로 몰린 상황에 이른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부채 문제 중 하나는 근로 의욕을 상실시키고, 소득이 채무의 한 달 이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또한 채권기관들의 추심으로 인해 계좌가 출금정지 되는 경우도 빈번하여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자포자기하여 근로를 포기하고 국가의 보조를 받거나 노숙인(노숙인의 77.1%가 신용불량자임, 2016년 통계청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노숙인등의 실태조사)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삶의 피폐와 가정의 해체로 이어지고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진다. 본소에서는 이러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법률구조를 통해 채무를 벗어나게 해줌으로써 신용불량자들이 희망과 의지를 갖고 가정과 사회에 복귀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

어 빈곤·저소득·소외계층 및 노숙인 등에 대한 파산 및 면책 법률구조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및 금융복지상담센터, 지역자활센터, 노숙인 시설 등을 통한 파산 및 면책법률구조의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조사는 본소가 2019년 한 해 동안 법률구조 한 파산 및 면책 사건 총 143건의 상담 내용과 내담자들이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 등을 토대로 파산을 신청한 신청자들의 특성과 채무의 액수 및 그 발생경위 등을 분석하였다.

1.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파산선고를 받으면 법률상으로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이 될 수 없는 등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되며 장래 일정기간 동안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가 어려워지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달리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다.¹⁾

2.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 분석

2019년 본 소에서는 138건의 파산·면책 신청사건과 면

책확인 소 3건 및 청구이의 소²⁾ 2건 등 총 143건의 신용불량자의 채무 면책사건을 진행하였다.

〈2019년 개인파산 및 면책 등 사건 분석 분석표〉

사건 명	사례 수(N)	백분율(%)
파산 및 면책	138	97
면책확인	3	2
청구이의	2	1
계	143	100

143건의 파산·면책 신청 등 사건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었다.

(1) 성별

소송구조 신청자 중 남성이 52% 여성이 48%로 나타났다. 본소의 파산·면책 소송구조사건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 사례에서 보면 여성이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실질적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생활비 부족과 병원비 등으로 인해 채무가 증대되고 결국 이를 감당할 수 없어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남편이 신용불량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채무변제를 위해 아내 명의로 채무부담을 늘리면서 채무자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들의 상당수는 채무문제로 인해 가정이 파탄된 경우도 있으나 파산·면책을 통해 가정이 안정되는 경우도 있어 다른 기관의 파산·면책 사건과 차별화 된다.

항 목	구 분	사례 수(N)	백분율(%)
성 별	남 성	75	52
	여 성	68	48
	계	143	100

(2) 연령

대상자의 연령은 50대(44%)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0대(23%), 40대(20%), 30대(7%), 70대 이상(4%), 20대

1)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

2) 면책결정 이후에 채무자의 고의 없이 채권자가 누락이 되어 채무자에게 변제청구가 된 경우 신청

(2%)의 순이었다. 이 중 40대 이상 60대 이하인 중장년층의 구조신청이 87%에 달하여, 경제적 갭생이 가능한 중장년층에게 신용 회복 및 사회 복귀, 경제활동 재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항 목	구 분	사 례 수(N)	백분율(%)
연 령	20 대	3	2
	30 대	10	7
	40 대	29	20
	50 대	63	44
	60 대	33	23
	70 대 이상	5	4
	계	143	100

(3) 지역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의 신청자가 가장 많았으며(78%), 그 밖에 경기, 인천, 전라, 경상 등 전국적으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도왔다.

항 목	구 분	사 례 수(N)	백분율(%)
지 역	서울	112	78
	인 천	27	19
	광주, 전라	3	2
	부산, 경북	1	1
	계	143	100

(4) 1인 당 채무액과 채권자 수

1인당 채무액을 살펴보면, 1천만 원 이상부터 10억 원 이상의 채무까지 다양했으며, 1억에서 5억 미만의 채무액(37%)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만(27%),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26%)의 순으로 전체의 53% 정도가 1억 미만의 채무였다. 143명의 면책 채무 총액은 37,813,787,708 원이었고, 이를 1인당 평균 채무액으로 환산하면 264,432,082 원이었다. 1인당 평균 채권자 수는 6명이었으나, 1인당 최다 채권자수는 20명에 달하기도 하였다.

항 목	구 분	사 례 수(N)	백분율(%)
채무액 (1인당)	1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39	27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37	26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53	37
	5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8	6
	10억 원 이상	6	4
	계	143	100

구 분	
면책 채무 총액	37,813,787,708 원
1인당 평균 채무액	264,432,082 원
최고 채무액	4,749,872,032 원
최저 채무액	10,162,276 원
1인 최다 채권자 수	20 명
평균 채권자수	6 명

(5) 채무증대사유

채무 증대 사유는 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을 결정함에 있어 주의 깊게 검토하는 부분 중의 하나이다. 채무증대 사유는 하나의 사유로 인한 경우보다는 다양한 경우가 많아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는 채무증대경위에 대해 복수의 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많은 채무자들이 2개 이상의 채무증대사유를 꼽은 것으로 볼 때, 신청자가 파산에 이르게 되는 채무증대사유는 복합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신청자 10명중 약 6.6명이 '생활비 부족'(66%)을 채무증대사유로 꼽아 기본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한 채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사업경영파탄'(36%), '타인의 채무조정'(15%), '사기피해'(6%), '낭비 등'(1%), '주택 구입자금 차용'(1%), '기타'(1%) 등의 순이었다. 상담내용을 보면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일단 카드를 사용한 채무자들은 카드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 받은 후 한 카드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다른 카드의 할부금을 내는 소위 돌려막기의 악순환에 빠진 경우, 자영업자의 경우 지속된 불황의 악화로 부족한 운영자금을 카드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로 조달하면서 대출원금과 이자를 다시 또 다른 대출을 통해 해결하면서 채무가 증가한 경우, 명의

를 도용당하거나 대여해 주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채무를 떠안게 된 경우, 노숙생활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이거나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속여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부정대출이나 물품 구입 등에 이용하여 채무자는 자신의 명의로 많은 채무를 지게 된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훗날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을 받은 후에야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 등 채무증대사유는 매우 다양하였다.

항 목	구 분	사례 수(N)	백분율(%)
채무증대사유 (중복가능) 143명기준	생활비부족	95	66
	주택구입자금 차용	1	1
	낭비 등	2	1
	사업경영파탄	52	36
	타인의 채무조정	22	15
	사기피해	8	6
	기타	2	1

(6) 지급불능 사유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에 이르게되는 사유도 1인당 1개 이상의 사유를 꼽았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변제할 원리금이 수입을 초과' (53%)한 경우였고, 그 다음으로 '실직' (32%), '경영 악화로 사업 폐업' (31%), '병원에 입원하여 더 이상 근로불가' (26%), '급여 또는 사업소득 감소' (12%), '사기 피해', '연대 보증',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1%) 등의 순이었다.

채무 증대사유와 채무 지급불능 사유는 서로 견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 실패나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는 생활비 부족과 그로 인한 채무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채무자는 이자 납입을 위해 또 다른 채무를 지게 된다. 채무자는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열악한 상황이 겹쳐 본인의 건강 악화와 실직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자 납입조차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파산·면책신청 등의 소송구조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

고, 근로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근로의사를 고취시켜 다시금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갱생과 사회 복귀 및 자활을 돕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작이 된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사회적 비용부담이 궁극적으로 감소하고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해결방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항 목	구 분	사례 수(N)	백분율(%)
지급불능 사유 (중복가능) 143명기준	변제해야할 원리금이 수입초과	76	53
	실직	46	32
	경영 악화로 사업 폐업	45	31
	급여 또는 사업소득 감소	17	12
	병에 걸려 입원	37	26
	사기피해	1	1
	연대보증	1	1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1	1	

(7) 소결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대다수의 채무자들은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으나 경영하던 사업의 실패, 실직이나 질병의 악화 그리고 이로 인한 생활비와 치료비 부족, 가족의 채무 변제를 위해 채무를 부담하는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신용불량에 처한 채무자에게 과도한 채무를 탕감해 줌으로써 다시금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돕는 직업교육 및 경제적 지원 등의 제도적·사회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낭비, 도박, 투기, 불법적인 명의대여, 강제 집행 면탈을 위한 재산 은닉 등의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채무자들도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상담현장에서 만나기도 한다. 따라서 성실하나 불운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의 갱생을 위해 마련된 파산 및 면책 신청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선별과정은 꼭 필요하다.

3. 주요 사례

(1) 이혼 전 남편이 사용한 채무자 명의 카드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 사건명 : 2019-122, 개인파산 및 면책

결과 : 2019. 05. 20. 파산 결정, 2019. 07. 15. 면책 결정

채무자(여, 62세)는 결혼 후 가정주부로만 생활해 왔다. 채무자의 남편은 1993년경 건설 장비인 콘크리트범퍼카를 구입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을 하면서 채무자의 남편은 채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였고, 채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게 하여 그 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 IMF 외환위기로 남편의 사업은 부도가 났고, 채무자의 카드대금 및 자동차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자는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채무자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식당과 보험회사 등을 다니며 일을 하였지만, 지체장애로 인해 장시간 일을 할 수 없어 경제사정은 더욱 어려워졌고 결국 사업실패 후 심해진 남편의 가정폭력과 불성실한 생활로 2006년경 이혼을 하였다. 채무자는 이혼 후에도 간헐적인 단순노무와 자녀들이 주는 생활비로 어렵게 생활하였으나, 혼인생활 기간 동안 전남편이 채무자 명의로 사용한 15,000만원을 변제할 수 없어 본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2)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신혼부부가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 사건명 : 2019-234, 개인파산 및 면책

결과 : 2019. 08. 05. 파산 결정, 2019. 10. 25. 면책 결정

채무자(남, 26세)는 부모님의 이혼 후 모친과 함께 살았으며,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중학교 재학 중 따돌림을 당하였다. 결국 채무자는 중학교를 자퇴하였고, 낮은 학력으로 인해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간헐적으로 일용직 근로를 하

며 생활하였다. 2018년경에 지금의 아내(여, 31세)를 만나 혼인하면서 신혼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7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아내도 혼인 당시 무직으로 저축은행에서 7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채무자 부부는 함께 일용직 근로를 하면서도 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대출금을 갚기 어려웠고 핸드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생필품 등을 구입하며 생활해 나가다 결국 부부 모두 신용불량자가 되어 노숙인 가족쉼터에 입소하게 되었다. 채무자 부부는 빚으로 혼인생활을 시작하면서 계속된 구직의 어려움으로 부부가 함께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총 채무액은 채무자가 약 1,400만원, 채무자의 아내가 약 1,900만원이었고, 비록 나이가 젊고 채무액이 다른 파산 및 면책신청자들이 비해 적은 액수였으나, 현재 생활 능력과 장래 변제가능성이 매우 낮아 본소에 부부의 개인 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3) 사업의 경영파탄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 사건명 : 2019-21, 개인파산 및 면책

결과 : 2019. 04. 08. 파산 결정, 2019. 06. 27. 면책 결정

채무자(남, 41세)는 2005년경 저축예금 4,000만 원과 삼촌에게 빌린 대여금 2,000만 원, 동업자의 투자금 6,000만 원으로 레스토랑을 개업하였다. 가게 운영 초기 영업 순이익은 월 평균 약 400만 원 정도나 되었으나, 2008년 경 동업자와의 불화로 동업비용 6,000만 원을 반환해 주기 위해 대출을 받아 채무가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진한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대출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인테리어 업주가 5,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받고 도주하여,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또 다시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가게 매출은 계속 감소하여 결국 폐업하였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진 채무 변제를 위해 채무자는 간헐적으로 일용직 근로도 하였으나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채무자는 장래 경제적 재기를 위해 본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4) 사기와 보증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 사건명 : 2019-207, 개인파산 및 면책

결과 : 2019. 08. 19. 파산 결정, 2019. 10. 28. 면책 결정

채무자(남, 85세)는 1996년경 보험영업을 하던 중 지인의 권유로 분양투자를 하게 되었다. 지인은 선착순으로 분양 기회가 주어진다고 재촉하였고 급한 마음에 채무자는 분양 신청과 함께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인에게 주었다. 그러나 분양을 한다는 건물은 존재하지 않았고 대출받아 지급한 돈을 사기 당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시기에 보증채무까지 독촉 받게 되면서 2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 그러나 고령으로 인해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다. 고령의 채무자는 향후 안정된 삶을 되찾기 위해 본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5) 정신증 발병으로 병원비와 생활비 부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 사건명 : 2019-21, 개인파산 및 면책

결과 : 2019. 09. 09. 파산 결정, 2019. 12. 13. 면책 결정

채무자(여, 36세)는 언론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으로 경제적으로 별 어려움 없이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부친이 운영하던 주유소가 적자로 경매처분 되면서 생활이 어려워졌고, 채무자는 '조현정동장애'를 앓게 되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더 이상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2017년경부터 신용카드 이용과 대출을 받아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원금과 이자변제를 위해 채무돌려막기까지 하게 되었다. 채무자는 자활을 위해 병원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노력하였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 병원비가 없어 '복지센터'에서 정신과적 상담을 받고 있다. 모친도 신용불량자로 친척 집에서 무상거주하며 친척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갑작스런 발병으로 채무자는 5,000만 원의 채무를 졌고, 빚 독촉에서

벗어나 건강을 회복하고 장래 경제적 재기를 위해 본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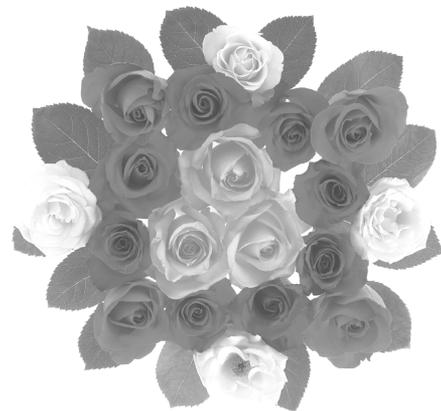
(6) 희귀난치병 발병으로 병원비와 생활비 부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 사건명 : 2018-176, 개인파산 및 면책

결과 : 2018. 09. 17. 파산 결정, 2018. 12. 28. 면책 결정

채무자(남, 46세)는 20대 초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성실히 저축을 하며 꿈을 키웠다. 그러나 2011년경 부친의 위암수술과 2013년경 모친의 담낭암수술로 부족한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채무자는 2,000만원을 대출받아 지인과 가게를 동업하였으나 결국 동업자와의 불화로 투자금 손실을 보게 되었다. 2016년에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해 경추수술 이후, 채무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다. 채무자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극심한 고통에 모든 생활을 포기해야 했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2018년경에는 고통을 척수전기자극기를 삽입하는 수술도 받았지만 큰 효과가 없어 현재까지도 수시로 응급실에 가야할 만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채무자는 희귀난치병으로 인해 약 5,0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본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조은경 · 전규선 상담위원





Q ▶▶▶

제 오빠는 자수성가하여 많은 재산을 모았으나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 가족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오빠에게 후견인이 필요한데 오빠의 아들인 조카는 오빠 병문안은 고사하고 몇 년 전부터 주식에 빠져 재산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동생인 제가 요양원에 있는 오빠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만약 후견을 개시한다면 오빠의 아들이 당연히 오빠의 후견인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동생인 저도 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요?

A ▶▶▶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개시됩니다(민법 제9조 제1항).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항).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조 제2항). 또한 피성년후

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6조 제1항, 제4항).

따라서 조카가 당연히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이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여동생인 귀하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최수진 상담위원



행위자 상담



부부 상호 폭력 증가 추세,
역지사지하여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해

사건번호 2017버2*** 재물손괴/
2017버2***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1회,
집단상담 6회, 교육강좌 1회,
부부집단상담 2회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1회,
자조모임 2회
부부 부부집단상담 4회 등 총 24회 실시

상담기간

2018. 11. 23. ~ 2019. 6. 19.

상담경과

부부는 혼인한지 28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2녀(26세, 25세)가 있다. 남편의 외도로 부부갈등이 계속되어 2016년부터 별거하면서 일이 있을 때면 만나고 왕래하였다. 2017년 10월 사건당일에도 만난 부부는 평소 남편이 바람을 피

우고 폭행한 것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남편이 '죽여 버리기 전에 나가라'고 한 것에 격분한 아내가 거실 및 부엌 등에 놓여있던 전기밥솥, 그릇, 접시, 가전제품 등을 집어던져 재물을 손괴하였고, 남편은 거실에 있던 청소기를 들어 아내를 향해 휘두르려 하고 양손으로 아내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부부 쌍방이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2018년 3월 부부는 재결합하였으며, 2018년 10월에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부부는 공동명의로 등기한 집을 분할할 때까지는 재결합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였다. 초상담시 아내는 남편에게 마음이 떠났으며 대화도 충돌도 없이 살고 있다고 하면서, 남편의 외도가 여전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반면, 남편은 아내와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지금 이대로만 지내면 좋겠다고 하였다.

상담 중기에 점검한 결과, 남편은 '내가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고 아내에게도 사과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상담 이전의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0점, 지금은 8점으로 평가하면서 변화된 점으로는 서로 이해하는 점이라고 하였고 모자라는 2점은 시간이 좀 지나야 해결될 것이라고 하였다. 아내는 남편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마음속 응어리가 여전하다고 하였다. 상담 이전의 부부관계를 10점 만

점에 0점, 지금은 5점으로 평가하고 변화된 점으로는 자신도 싸움을 걸려고 하지 않았고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며 불필요한 충돌은 없었다는 점을 꼽았다. 상담초기에 비하여 아내의 마음이 많이 열렸고 남편과 노력하려는 의지가 보였다.

부부집단상담에서 남편은 다른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는데, 이후 경제 문제에서 아내와의 관계 개선이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종결상담에서 남편은 자신이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 주었는데 아내가 씹씹이가 커서 남겨놓은 돈이 하나도 없고,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상가와 다가구주택의 임대료를 아내가 독점하며, 종결상담 며칠 전에는 남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가는 등의 행위를 하여 배신감이 크고 허무하여 별거나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였다. 아내는 남편이 상담을 받으며 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 같다고 하였지만, 그 외 경제적 책임이나 외도 문제는 개선되지 않아 이혼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정리할 것이 남아서 시간을 가진 후 2019년 후반기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하였다. 일단 폭력이 중단된 점은 유의미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재산분할기준 등을 설명하였으며 시간적, 정서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권유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사건번호 2018버2*** 폭행 /
2018버2***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6회, 집단상담 8회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3회, 교육강좌 2회
부부상담 1회, 부부 부부캠프 1회 등 총 22회 실시

상담기간

2018. 12. 4. ~ 2019. 6. 10.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 지 19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녀(16세)가 있다. 2018년 8월 사건당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가 밥솥으로 남편의 팔 부위를 치고 마시던 물을 끼얹는 등 폭행을 하고, 남편은 아내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여 부부 쌍방이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남편은 직장에서 희망퇴직 압박을 받는 중이고, 2016년에 집을 매입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 상환 때문에 아내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못하여 갈등이 심해졌는데 본 사건도 그 다툼 중에 발생하였다. 아내는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자 카드빚으로 생활하였고 그 대금 변제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하였다.

다행히 남편은 상담초기에 자신의 변화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아내와의 대화에서 비폭력대화법을 실천하였고,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전과 달리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자가 저렴한 대출을 받아 같이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으려 노력하였는데, 아내는 이를 가장 큰 변화로 인정하였다. 전에는 운동을 간다고 하면 잔소리와 듣기 싫은 소리를 하여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였다.

부부는 각자의 사정에 맞게 상담에 참여하였고, 1박2일 부부캠프에도 참여하였다. 상담기간 중 부부의 폭력은 재발되지 않았고 관계도 개선되었다. 종결상담 시 부부 모두 현재의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8.5점으로 평가하고 지금 처럼만 지내면 좋겠다고 바람을 이야기하였다. 남편은 부부 모두에게 역지사지의 마음이 생긴 것을 변화된 점으로 꼽았다. 아내는 그동안 남편이 분노조절을 잘 하였고,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다고 변화를 인정하였지만, 향후 경제적 어려움이 또 발생할 때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부부는 상담이 종료된 이후에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기/획/연/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987년 2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30년사』발간
- 7월 법률구조법 제정을 이끌어 냄
- 1988년 7월 법률구조법에 의거 민간단체로는 최초로 법률구조법인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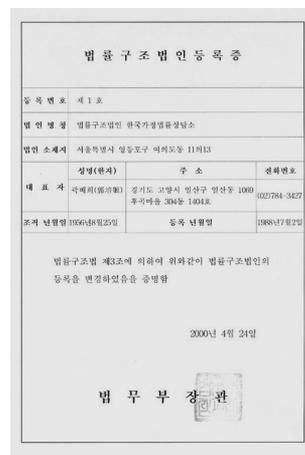
최초의 민간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소는 1986년 창립 30주년을 지내면서 정부 차원의 법률구조법 제정을 촉구했으며, 그 결과 12월 23일 법률 제 3862호로 <법률구조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구조법’은 최초의 국영 법률구조 단체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과 함께 산하에 등록된 민간 법률구조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로 법률구조 개념을 도입하여 30여 년 간 법률구조 사업을 펼쳐온 상담소는 이러한 ‘법률구조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법이 제정된 후 상담소는 1988년 5월 법무부에 방문하여 ‘법률구조법에 의거하여 유일한 민간 법률구조사업 기관인 본소에 재정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하

였으며, 6월 23일에는 법무부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이날 감사는 상담소의 법률구조 기관 등록에 앞서 주무부처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이었다. 이날 감사를 나온 법무부 인권과 관계자들은 상담소의 사업실태와 예결상황, 운영체계 그리고 교육원(현 교육부)과 도서실 등을 둘러보고 상담소의 활동상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 결과 1988년 7월 22일 상담소는 법무부에 첫 민간 법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가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법률구조법(1986.12.23. 법률 제386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하여 줌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률구조법인의 등록) ①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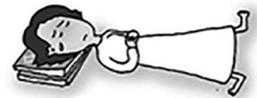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보조금의 교부) 정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률구조법인 등록을 마치고, 등록번호 1이 기재된 법률구조법인 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법률구조법인 등록은 법률구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상담소는 국가로부터 필요한 재정을 보조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

편집부





글 | 그림 | 장차현실

극한의 자유



거추장스러운 사회적 시선을 던져버리고 동물답게 이빨을 드러내며 자유를 느낀다.
극한의 상황은 괴로움도 주지만 새로운 상상력과 변화를 주기도 한다.



좋은 책



어릴 때 읽었던 글로리아 스타이넴의 '생리'에 관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녀가 말하길 '어느 날 갑자기 신기하게도, 남성이 월경을 하고 여성은 하지 않게 되면 월경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자랑할 가치가 있는 남성들의 행사가 될 것. 남성들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하는지 자랑할 것이며, 소년들은 남성이 되었다는 상징인 초경을 종교 의식과 파티로 축하할 것이다. 의회는 매달 남자들이 불편한 일을 겪지 않도록 '국립 생리불순 연구소'에 연구비를 지원할 것이며, 위생 용품은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무료로 될 것이다.' 종교, 경제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생리'가 얼마나 다르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적나라하게 풀어낸 이 이야기가 이 책 『100가지 물건으로 다시 쓰는 여성 세계사』를 읽으며 계속 상기되었다.

영국의 문화사학자 매기 앤드루스와 여성학자 제니스 로마스는 영국 여성의 참정권 획득 100주년을 기념하여 이 책 『100가지 물건으로 다시 쓰는 여성 세계사』를 썼다. 제목처럼 이 책은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거나, 여성들이 만들었거나 혹은 오늘날까지도 여성을 억압하고 있는 100가지 물건 혹은 상징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발달해온 과정을 기록하였다.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성사의 100가지 상징들은 여성의 몸, 사회적 역할의 변화, 기술의 진보, 미 의식과 소통, 노동과 문화, 정치 등 총 여덟 가지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여성사의 전말을 담아내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이 남긴 풍부한 유산을 알 수 있고, 여성이 어떻게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성에 순응하도록 조장되었으며, 그러한 압

박감에 어떻게 맞서왔는지를 들려준다. 즉 이 책은 여성과 페미니즘의 역사에 관한 복잡하고 흥미로우며 중대한 이야기를, 무겁지 않게 그러나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이 소개하는 첫 번째는 루시의 뼈다. 루시는 '인류의 할머니'라 일컬어지는 최초의 인류인데 루시 이래 수백만 년간 여성의 역사는 진화해왔지만, 그녀의 뼈가 그리하듯 불안정한 파편들로 흩어져 그 궤적을 좇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책의 첫 장으로 더 없이 적절해 보였다. 이것을 시작으로 임신과 출산을 상징하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포르노그래피와 여성의 대화화를 이야기하는 '호텐토티의 비너스 염서' 등 첫 장의 12가지는 몸과 모성, 섹슈얼리티로서 여성의 경험을 미리 결정지어온 것들이며 이어 아내와 가정주부, 가사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해방을 주제로 한 과학과 기술 등을 거쳐 여덟 번째 마지막 장은 '여성의 정치 - 그리고 살아남다'를 주제로 마지막 100번째는 훼손된 마거릿 대처 조각상이다. 저자들은 이를 통해 여성이 주인공인 '리더와 권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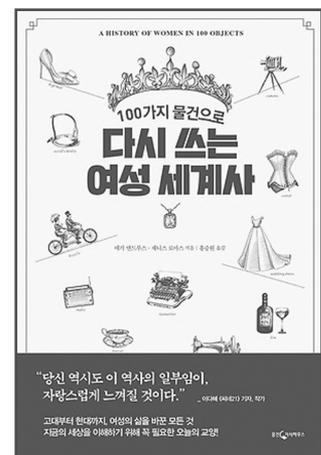
책의 내용에 대해서 그 시각은 새롭고 세부적인 내용은 흥미진진하였으나 번역에 있어서는 몇 군데 오기와 몇 군데 어색한 부분이 아쉬웠고 책의 제목 "100가지 물건으로 다시 쓰는 여성 세계사"가 "A HISTORY OF WOMEN IN 100 OBJECTS"라는 원제목을 옮긴 최선일가에 대해서도 약간의 아쉬움과 의문이 남았다.

이숙현 편집부장

100가지 물건으로 다시 쓰는 여성 세계사

매기 앤드루스 · 제니스 로마스 지음
홍승원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2020



임상실습 소감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소에서 지난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임상실습을 한 동국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의 임상실습 소감을 3월호에 이어 싣는다.

남 가 윤

동국대학교

현장실습연수를 오기 전에는 학교에서는 실무적인 부분을 경험할 수 없으므로 작은 일이라도 직접 해보면서 많은 것을 얻어가겠다고 다짐하고 기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전화상담 안내 실습을 하면서 전화를 받는 것조차 긴장되고 혹시나 실수를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실습에 적응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그분들께 아무런 도움이 못된다고 느껴 매우 자책이 들었습니다. 이때 선생님께서 '자책할 필요 없고 그분들에게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만해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선블리 얇은 지식을 전하기보단 친절하게 받은 후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공부하며 알아 가면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후로 생각을 바꾸고 선생님께서 조언해주신 대로 전화 받은 후 부족한 부분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출간한 가정법률사례집 '어떻게 할까요'와 법전을 찾아보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지식을 습득하다보니 점점 가족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실무를 3건 작성하면서 부채증명관련 서류를 보는 방법과 다른 필요 서류들을 검토하고 분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경제활동이 어렵고 힘든 분들의 채무 면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매우 뿌듯했습니다. 또한 파산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또 그 필요 서류와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상담참관과 법원상담

참관을 하면서 생각보다 법을 우리 생활과는 먼 것으로 느끼고 매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직접 느꼈습니다. 내담자분들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무료상담을 받으며 부담 없이 도움 받는 것을 보니 뿌듯하였고 일반 국민들이 법을 쉽게 접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해야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최 지 은

동국대학교

현장실습 업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아침 회의시간에 참석하여 선생님들 앞에서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소개와 다짐을 말하는 간단한 일이었는데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마치 앞으로의 나날들이 좌우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식을 쌓고 풍부한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미덕, 처음 마주하는 사람을 존중함과 동시에 어색한 기운 없이 대화할 줄 아는 유연함을 얻고 싶다고 말했던 것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려운 저에게는 늘 힘든 숙제였습니다. 현장실습인 만큼 가족법 상식을 공부하고 적용하는 것이 주된 실습과정이었지만 단순히 법의 적용뿐만 아니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기에 사람을 대하는 일이 가장 큰 범주를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습 중 전화상담 안내가 저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수화기를 드는 것도 두려운 일이었는데, 함

게 근무하는 실습생들의 격려와 조언으로 점차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두어 달 동안 함께 근무한 실습 동료들과 서로 도와가며 업무를 수행한 것, 수많은 내담자를 간접적으로나마 마주한 것으로 출근 첫날 다짐했던 것처럼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황 인 경
.....

이화여자대학교
.....

2019년 1년 동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상담소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난 2달 간 상담소에서 배우고 실습한 업무들은 제가 이제까지 배운 실무들 중에서도 가장 유용한 지식들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소장, 진술서, 증인진술서, 파산 및 면책, 법원 참관 등 소송구조와 관련된 실무를 접하며 이론으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실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담소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거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 제 자신에게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는 빚이 8000만 원 가량 있는 의뢰인의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작성 실습을 했던 일이었습니다. 파산업무를 해보기 전에는 노숙자들만 파산신청을 하는 줄 알았는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파산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을 가졌었지만 학창시절 생계를 위해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과 빚이 쌓여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으로 아이의 양육비와 생활비 부담까지 더해져서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노숙인 시설을 전전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도움으로 임대주택에 살고 있지만 기본적인 가구 하나 없는 곳에서 아이와 둘이 사는 것이 힘이 들었고 공공근로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월급의 반 이상이 대출이자로 나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빚을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진술서를 읽으며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저는 파산 및 면책신청 절차를 검토하며 이 제도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꼼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2년 내 해외여행 여부, 사치품 구매 여부, 파산을 할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이 있는지 등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검토해야 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서류들을 검토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파산 실무를 통해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파산신청을 하는지 알 수 있었고 어떤 절차를 거쳐 구제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경험은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법조인으로서의 제 삶의 방향을 더욱 확고히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
김 하 유
.....

이화여자대학교
.....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인 법률이 사람들의 삶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다는 기대감으로 현장실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습활동을 통해 법률구조 사건의 의뢰서와 소장 작성 실습을 하면서 그리고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혼, 양육비, 재산분할 등 다양한 사건들이 처리될 때 어떤 사실이 법적인 고려 대상이 되는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상담 통역, 상담위탁을 받은 내담자들의 개별상담일지 작성 등의 업무를 통해서 내담자가 어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직접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실무적인 현장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점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실무를 경험하면서 소장과 진술서의 형식과 작성 방법, 내담자를 대하는 방법 등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

원직무연수를 통해 상담위원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가사 소송은 단지 법적인 효력만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에 돌이킬 수 없는 갈등도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배웠는데, 실제로 전화 상담 안내를 하면서 소송으로 인해 생긴 갈등으로 인해 괴로워하시다가 결국 소를 취하하고 싶다는 내담자의 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소송으로 인해 부가적으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 내담자가 충분히 고민하고 숙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직접 배울 수 있었습니다. 상담소에서 다루는 가사 사건은 특히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담자의 상황에 더욱 공감하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깊게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상담 안내, 법원 및 상담소에서의 상담 참관, 진술서 작성, 상담 통역, 법률구조의뢰서 작성 등의 법률구조업무 실습을 통해 조금이나마 내담자를 돕는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드릴 수 는 없기에 매우 아쉬웠고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 전문가로서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실습활동은 내담자들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각각의 사건마다 내담자에게 어떻게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했던 고민들이 앞으로 제가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 방향성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 재 혁

동국대학교

실습기관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오기 전에는 '가정법률상담소' 라는 명칭에서 법률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곳이겠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만을 가졌다. 그러나 실습을 하루 하루 해나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부터 오는 상담전

화를 받으며, 또 선생님들께서 상담하는 것을 참관하면서 나의 이러한 생각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상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전화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직접 느낄 수 있었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하는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구조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새롭게 알게 된 법률적 지식, 소송구조 관련 서류 작성, 재판관련 자료의 정리 등 수많은 일들을 배웠다. 하지만 가장 큰 배움은 봉사정신 및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깨달은 것이다.

조 은 송

이화여자대학교

저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실습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는 변호사를 희망하고 있다고는 해도 모든 게 막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오고 나서도 초반에는 제가 과연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법률구조실습을 하면서 법률구조 의뢰서 작성이나 내담자분들의 진술서 작성을 도우며 모든 일들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법률구조를 신청하시는 내담자분들 모두에게 각자의 사연이 있고, 그 어려움에 처해있는 내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법률적 도움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선생님들께서 제공한다는 점에서 선한 영향력과 가장 맞아있는 기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목표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실현하는 경험을 처음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실습기간 동안 법률구조실습을 통해 법률구조의 신청부터 구조결과 정리 등을 통해 법률구조의 처음과 끝에서 그 과정을 실제로 보고 법의 쓰임과 법적 절차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상대방의 입

장에 공감할 수 있을지, 객관적으로 상황을 처리할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법을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계속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비록 실습생 수준에서 하는 업무들이었지만 가족법을 계속 활용하면서 제가 가진 법에 대한 이해도와 법학 적성에 대해서도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을 통해 법률구조 실습뿐만 아니라 삶과 진로에 대한 조언을 얻기도 했습니다. 저에 대한 정체성과 진로가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실습을 통해 좋은 전환점을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꿈꿨던 선한 영향력에 대해 정의내리고 로스쿨 진학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목표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 법률 지식을 학습하고 판례를 정리하며 다양한 사건에 대한 판례의 동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담소에서의 크고 작은 여러 업무들은 지식을 갖추고 스스로를 성장하게 해주는 값진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상담소에서의 두 달간의 실습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가족법을 비롯한 법률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 왜 그러한 지식이 요구되고 있는지, 실제 현실에서 어떠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를 몸소 경험하며 살아있는 지식을 보고 듣고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담소에서의 실습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의 진로에서는 어떤 일을 맡게 되더라도 성실히 배우는 자세와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열정적인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실습생으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달 간의 상담소에서의 실습은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

강 명 희

이화여자대학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첫 날 오리엔테이션은 두려움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상담소에서 앞으로 하게 될 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으며 실습 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었고, 상담소의 역사와 설립 취지에 대한 영상을 볼 때는 뜻깊은 일을 하는 상담소에서 직접 실습하게 된다는 사실에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률구조실습에서는 상담소에서 소송구조가 종결된 사안들의 결과정리를 하였습니다. 변호사님들께 보내드릴 소송구조 관련 공문이나 사건 결과 보고서를 정리하며 상담소의 주요 업무인 소송구조 활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배울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이론으로만 알던 지식들의 활용 실례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판결문을 읽고 우수 사건들을 정리하는 업무를 통해 다양한 사건들의 경위와 그 과정 및 결과를 한눈에 알아보고 공부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소송 중인 사건의 준비서면을 작성하며 사건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간결하고 정연한 글을 쓰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으며 상속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작성하며 상속에

.....

고맙습니다

후원 고맙습니다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재무회계과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본소, 아동권리보장원과 요보호아동 복지증진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4월 8일 본소(곽배희 소장)는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과 ‘요보호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교환하였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연락두절,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친권자의 법정대리권 이행이 불가하여 요보호아동의 권익이 침해될 경우, 미성년후견인 선임 등의 법률지원과 요보호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법률 개정, 연구·조사,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교류와 업무협력을 상시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5월부터 본소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의뢰하는 요보호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성과 분 변경, 입양 등의 법률지원을 진행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요보호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적·통합적 법률구조의 확대와 권리 침해를 받는 아동들이 없는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양 기관은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본 상담소, 서울시로부터 착한 마스크 세트 6,000세트 지원받아

본소는 지난 4월 6일 서울시로부터 면 마스크와 손소독제로 구성된 착한 마스크 세트 신청 안내 공문을 받아 본소 직원과 상담소 이용자들이 착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량을 신청하였고, 지난 4월 21일 착한 마스크 세트 6,000 세

트를 수령하였다. 본소는 5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방역물품으로 이를 사용할 예정이다.



착한 마스크 세트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해 전반적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이나, 순회상담의 경우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고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다른 부문도 점차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 4월 1일 과천 여성 비전센터 순회상담(전화상담)
- 최수진 상담위원
- 4월 22일 BBS 불교방송 다문화관련 인터뷰
- 김진영 상담위원
- 4월 22일 과천 여성 비전센터 순회상담(전화상담)
- 조은경 상담위원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4월 17일과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족다양성분과위원회에 참석하였다. 27일에는 서울가정법원 조정에 참여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4월 21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가정보호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였고 23일에는 서울가정법원 조정에 참여하였다.

2020년 4월 상담통계

총상담 4,338				
법률상담 (4,150)				
면접	전화	인터넷	순회	지상
332	3,674	138	5	1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113		26		49

* 인터넷 정보 이용 50,419

2020년 4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338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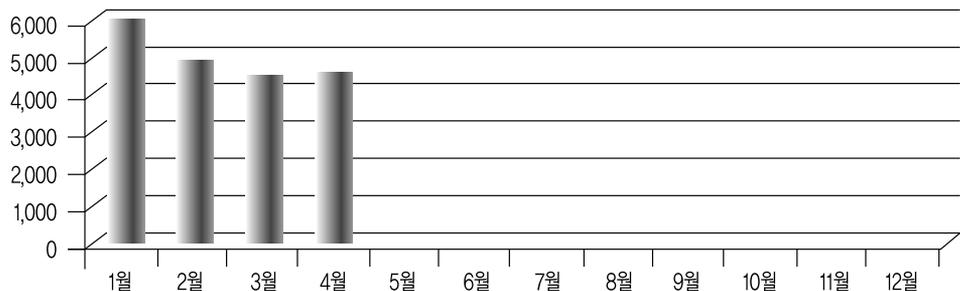
4,150건(95.7%), 화해조정 113건(2.6%), 소장 등 서류작성 26건(0.6%), 소송구조 49건(1.1%)이었다.

법률상담 4,150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0년 3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친권·양육권(5.7%→5.8%), 면접교섭권(2.8%→2.9%), 친생부인(0.8%→1.4%), 친생자존부(2.1%→2.3%), 입양(0.9%→1.0%), 부양(2.1%→2.2%), 유언·상속(4.8%→5.8%), 가족관계등록부(3.7%→3.9%), 성변경(0.7%→1.0%), 파양(0.2%→

0.3%), 성년후견(1.3%→2.1%), 가사절차(5.4%→6.2%)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임대차(0.2%→0.4%), 채권·채무(0.6%→0.7%),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기타(0.5%→0.7%)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4,150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332건(8.0%), 전화상담 3,674건(88.5%), 인터넷상담 138건(3.3%), 순회상담 5건(0.1%),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20년 월별 총 건수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19-134

담당 : 노경환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43세)과 피신청인(남, 44세)은 2013년 5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4세)을 두었다. 이후 2017년 9월 이혼판결이 확정되었고,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다. 또한 피신청인은 양육비로 2015년 8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4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을 받은 후 지금까지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없는 상황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급여채권 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으나 해당 다단계회사로부터 피신청인의 코드만 있을 뿐 활동을 하지 않아 지급할 수 있는 급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 신청인은 소득활동을 위해 사건본인과 떨어진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사건본인의 양육을 부모님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미지급된 사건본인의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3. 20.)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방법원 ○○지원 2017드 단000호 이혼 등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미지급 양육비 중 8,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명령이 고지된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4개월간 월 2,000,000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혼인 초부터 아내에 대한 폭행과 외도를 지속해 온 남편과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9-230

담당 : 박설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74세)와 피고(남, 78세)는 1970년 12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1971년경 피고는 음주 후 원고의 등을 향해 벽돌을 던진 사실이 있고, 같은 해 물 길는 펌프를 원고의 머리에 내려쳐서 9바늘 꺾매는 상해를 입혔다. 또한 음주 후 밤늦게 귀가하여 원고의 얼굴을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아 원고는 현재까지 앞니가 흔들린 채로 생활하고 있다. 1977년경 피고의 외도가 시작되어 상간녀와 동거하며 혼외자까지 낳았고, 원고는 혼외자를 양육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는 혼외자의 생모인 위 상간녀와 헤어진 후 또 다른 여성과도 동거하는 등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 중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9. 10. 1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앞으로 서로에게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모에 관한 기재사항이 부재한 자녀의 등록부를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청구를 통해 정정**

법률구조 2019-278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

내용 : 피고(여, 27세)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에 관한 기재사항이 없었다. 피고의 생모인 원고(여, 67세)는 소외 망인과 혼인 중이던 1992년 11월 경, 배우자와의 별거로 다른 남성과 동거 중이었는데, 동거 남성과의 사이에서 피고를 출산하였다. 원고의 동거 남성은 피고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출생신고를 하면서 모의 본적 및 모의 성명을 미상으로 기재하였다. 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사항에 부만 등재되어 있고, 모는 등재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1999년 9월 경 원고와 동거 남성은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를 양육하며 혼인생활을 이어갔다. 이에 모에 관한 기재사항이 부재한 피고와의 친모녀 관계를 밝히고, 피고의 출생 당시 원고와 혼인 중이던 소외 망인과 피고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 함을 밝힘으로써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실에 부합하게 정정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1. 17.)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피고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친가족처럼 아동을 양육하던 위탁모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법률구조 2019-380

담당 : 양종찬 변호사

사건명 : 미성년후견인 선임

내용 : 사건본인(남, 11세)의 조부는 청구인(여, 66세)의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다. 어느 날 사건본인의 조부가

당시 신생아였던 사건본인의 친부를 청구인에게 맡기며 3일 후 찾으러 오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부를 친자녀로 여기며 양육하였고, 사건본인의 친부 또한 청구인을 친모로 여기며 성장하였다. 사건본인의 친부는 2008년 혼인하였고, 사건본인이 출생하였다. 그러나 사건본인의 친모는 사건본인을 방임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신생아 때부터 실질적인 양육을 하였다. 결국 2012년 1월 사건본인의 친부모는 이혼하였고 친부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결정되었다. 청구인과 사건본인, 사건본인의 친부가 함께 생활하던 중 2017년 1월 사건본인의 친부가 뇌출혈 및 간경화로 사망하게 되었다. 사건본인의 친모는 이혼할 당시부터 사건본인의 존재가 본인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양육을 거부하였으며, 사건본인에게 단 한 번의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 사건본인은 청구인을 친조모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의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년 2월 사건본인에 대한 위탁 결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사건본인은 청구인을 유일한 가족으로 여기고 있으며 주된 양육자로 따르고 있다. 청구인 또한 사건본인을 헌신적으로 양육해왔으나 친부가 사망하면서 발생한 유족연금 처리,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제출 등을 처리하여 주지 못하는 법적 제약에 직면해야 했다. 이에 청구인은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벗어나 사건본인을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하고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18.)

1.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2. 미성년후견인은 2020. 4. 30.까지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2020. 2. 1.)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성년후견인은 2021. 3. 1.을 시작으로 매년 3. 1.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제출년도 2. 1.)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사건본인 명의로 금전을 빌리거나 의무

만을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9-415

담당 : 신은숙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0세)은 혼인 후 지방에서 상경하여 배우자와 함께 가락시장에서 장사를 하였다. 두 자녀를 양육하며 약 15년간 하루 12시간이 넘도록 일하며 생활하였다. 그러다 2003년경 지인이 냉동 고등어 장사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추천하여 배우자와 함께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장사를 해도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고 나면 냉장요금조차 감당할 수 없었다. 적자가 지속되어 결국 2006년경 채무만 남긴 채 폐업에 이르렀다. 이후 신청인의 배우자는 재기를 위해 다른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사기를 당하였다. 이로 인해 신청인 또한 채무가 가중되었고 식당에서 일용근로를 하며 저소득에 시달리던 신청인으로서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2008년경 사고로 왼쪽다리 십자인대가 파열되면서 일용근로마저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다. 생활이 더욱 어렵게 되면서 배우자와는 경제적으로 잦은 갈등을 겪게 되었고, 배우자는 결국 가출을 하여 현재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청인은 과도한 채무를 앞으로 변제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4. 21.)
채무자를 면책한다.

**건강악화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0-10

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38세)은 여동생의 유방암 수술비와 입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약 9년간 모아온 청약을 해지하고 대출을 받았다. 항암치료와 수술을 받은 여동생은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어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지만 요양병원의 입원비도 만만치 않았고 신청인의 소득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열심히 일하며 꾸준히 채무를 변제해 나가던 중 2019년경 일을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아픈 몸을 이끌고 무리하게 다시 일을 시작해보았지만 허리디스크가 재발하면서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결국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고 현재 디스크수술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악화로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신청인은 채무독촉에서 벗어나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4. 21.)
채무자를 면책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